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3. 이정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정현의원)

우체국 우편 · 예금 · 보험사업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

고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 지원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이러한 전출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는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정사업의 근간 사업인 우편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체국보험은 2002년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기금 출연의무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출연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 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안정적인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 개정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몰에 따라 2027년 이후 출연 의무가 종료되면서 기금에 출연하던 금액만큼 유휴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것과 동일한 규모를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회계의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존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범위 내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안정성 훼손 우려를 줄였고,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우편사업 지원을 통해 전체 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우편사업특별회계와 달리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결손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손 보전을 지원하지 않는데 보험에서만 예금을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
- 따라서 개정의 실효성과 회계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안정성 침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결손보전 대상에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결손 보전 재원으로 규정한 “이익이 생긴 회계의 이익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이 포함된 통합 결산서 상 이익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데,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성격을 가진 자금으로, 다른 회계의 결손보전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결손보전 재원으로 “이익이 생긴 회계의 잉여금”을 제8조제2항 본문에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규정한 것과 같은 표현인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 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결손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결손보전 대상에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결손보전 재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원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수정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결손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결손보전 대상에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결손보전 재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원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

안 제8조제2항 단서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를 “우편사업특별회계의”로, “이익이 생긴 회계의 이익금”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세입과 세출) ① (생략)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조(세입과 세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신설>	5.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5.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생략)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
	다만,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u>	우편사업특별회계의-----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 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③ · ④ (생략)	<u>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 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출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